

【판시사항】

【판결요지】

【참조조문】

대법원 1977.9.28. 선고 77다300 판결 【손해배상】

[집25(3)민,80:공1977.11.15.(572) 10333]

【판시사항】

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

【판결요지】

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.

【참조조문】

민법 제750조, 교육공무원법 제35조